

구서역 포르투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구서역 포르투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분양사무소 방문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행조치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분양사무소 입장전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비접촉체온기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구서역 포르투나 분양사무소 내 분양 상담전화(☎051-717-3933)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 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12.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7년간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모두 적용)(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20.11.12. 이전부터 거주)가 우선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 1순위 해당 신청 가능.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 1순위 기타 신청 가능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건설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 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연도별 183일을 말함) 이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4항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 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0.09.29.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85㎡이하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범위 내, 민간택지는 7%범위 내)이 적용 됩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소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 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경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경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시공사 홈페이지(www.kiha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2020.0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다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촉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소유권이전일까지)	3년(소유권이전일까지)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 질서 교란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자는 「주택법」 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0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해당지역) (부산시 1년 이상 거주자)	일반1순위(기타지역) (부산시 1년 미만, 경남, 울산)	일반2순위		
일정	2021.11.12.(금)	2021.11.22...(월)	2021.11.23.(화)	2021.11.24.(수)	2021.11.25.(목)	2021.12.02.(목)	2021.12.13.(월) ~ 2021.12.15.(수)
방법	시공사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소 게재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개별조회	분양사무소 방문
시간	-	09:00 ~ 17:30	09:00 ~ 17:30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 ~ 16:00
장소	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kiha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분양사무소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당사 분양사무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사무소 내 방문 청약은 불가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무소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9.2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나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 - 53184호 (2021.11.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50번길 146(구서동)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최고) 1개동 총 145세대 중 일반공급 93세대, 특별공급 52세대 / 오피스텔 26실, 근린생활시설 5실은 별도 분양 예정 [특별공급 52세대(일반[기관추천] 8세대, 다자녀가구 8세대, 신혼부부 26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 일반공급 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829	01	49.8290A	50A	49.8290	23.9068	73.7358	6.3857	80.1215	8.7778	36	2	2	7	1	2	14	22	2
		02	50.9432B	51B	50.9432	24.9015	75.8447	6.5285	82.3732	8.9741	36	2	2	7	1	2	14	22	2
		03	51.0868C	51C	51.0868	24.4312	75.5180	6.5466	82.0646	8.9990	1	0	0	0	0	0	0	1	1
		04	51.0868D	51D	51.0868	24.4306	75.5174	6.5467	82.0641	8.9993	17	1	1	3	0	1	6	11	0
		05	51.2791E	51E	51.2791	23.9089	75.1880	6.5716	81.7596	9.0332	18	1	1	3	0	1	6	12	1
		06	51.9447F	52F	51.9447	24.0875	76.0322	6.6568	82.6890	9.1505	18	1	1	3	0	1	6	12	1
		07	77.7477	78	77.7477	35.4385	113.1862	9.9635	123.1497	13.6959	19	1	1	3	0	1	6	13	1
합 계											145	8	8	26	2	8	52	93	8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사무소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49.8290A	50.9432B	51.0868C	51.0868D	51.2791E	51.9447F	77.7477
주택형 약식표기	50A	51B	51C	51D	51E	52F	7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수	라인별	총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20%)	2회(20%)	3회(10%)	입주지정일
										2022.01.10	2022.02.10	2022.03.10	
49.8290A	50A	36	7, 8	3	2	138,885,800	158,514,200	297,400,000	29,740,000	59,480,000	59,480,000	29,740,000	118,960,000
				4	2	140,006,600	159,793,400	299,800,000	29,980,000	59,960,000	59,960,000	29,980,000	119,920,000
				5~7	6	143,882,700	164,217,300	308,100,000	30,810,000	61,620,000	61,620,000	30,810,000	123,240,000
				8~10	6	145,237,000	165,763,000	311,000,000	31,100,000	62,200,000	62,200,000	31,100,000	124,400,000
				11~13	6	147,011,600	167,788,400	314,800,000	31,480,000	62,960,000	62,960,000	31,480,000	125,920,000
				14~17	8	149,159,800	170,240,200	319,400,000	31,940,000	63,880,000	63,880,000	31,940,000	127,760,000
50.9432B	51B	36	4, 5	3	2	143,742,600	164,057,400	307,800,000	30,780,000	61,560,000	61,560,000	30,780,000	123,120,000
				4	2	144,956,800	165,443,200	310,400,000	31,040,000	62,080,000	62,080,000	31,040,000	124,160,000
				5~7	6	147,665,400	168,534,600	316,200,000	31,620,000	63,240,000	63,240,000	31,620,000	126,480,000
				8~10	6	149,813,600	170,986,400	320,800,000	32,080,000	64,160,000	64,160,000	32,080,000	128,320,000
				11~13	6	151,634,900	173,065,100	324,700,000	32,470,000	64,940,000	64,940,000	32,470,000	129,880,000
				14~17	8	153,829,800	175,570,200	329,400,000	32,940,000	65,880,000	65,880,000	32,940,000	131,760,000
51.0868C	51C	1	6	3	1	144,022,800	164,377,200	308,400,000	30,840,000	61,680,000	61,680,000	30,840,000	123,360,000
51.0868D	51D	17	6	4	1	145,750,700	166,349,300	312,100,000	31,210,000	62,420,000	62,420,000	31,210,000	124,840,000
				5~7	3	148,832,900	169,867,100	318,700,000	31,870,000	63,740,000	63,740,000	31,870,000	127,480,000
				8~10	3	150,140,500	171,359,500	321,500,000	32,150,000	64,300,000	64,300,000	32,150,000	128,600,000
				11~13	3	151,961,800	173,438,200	325,400,000	32,540,000	65,080,000	65,080,000	32,540,000	130,160,000
				14~17	4	154,483,600	176,316,400	330,800,000	33,080,000	66,160,000	66,160,000	33,080,000	132,320,000
				18~20	3	157,238,900	179,461,100	336,700,000	33,670,000	67,340,000	67,340,000	33,670,000	134,680,000
51.2791E	51E	18	1	3	1	139,119,300	158,780,700	297,900,000	29,790,000	59,580,000	59,580,000	29,790,000	119,160,000
				4	1	140,800,500	160,699,500	301,500,000	30,150,000	60,300,000	60,300,000	30,150,000	120,600,000
				5~7	3	144,162,900	164,537,100	308,700,000	30,870,000	61,740,000	61,740,000	30,870,000	123,480,000
				8~10	3	146,124,300	166,775,700	312,900,000	31,290,000	62,580,000	62,580,000	31,290,000	125,160,000
				11~13	3	147,431,900	168,268,100	315,700,000	31,570,000	63,140,000	63,140,000	31,570,000	126,280,000
				14~17	4	153,362,800	175,037,200	328,400,000	32,840,000	65,680,000	65,680,000	32,840,000	131,360,000
51.9447F	52F	18	9	3	1	131,133,600	149,666,400	280,800,000	28,080,000	56,160,000	56,160,000	28,080,000	112,320,000
				4	1	132,628,000	151,372,000	284,000,000	28,400,000	56,800,000	56,800,000	28,400,000	113,600,000
				5~7	3	134,916,300	153,983,700	288,900,000	28,890,000	57,780,000	57,780,000	28,890,000	115,560,000
				8~10	3	137,251,300	156,648,700	293,900,000	29,390,000	58,780,000	58,780,000	29,390,000	117,560,000
				11~13	3	139,025,900	158,674,100	297,700,000	29,770,000	59,540,000	59,540,000	29,770,000	119,080,000
				14~17	4	143,088,800	163,311,200	306,400,000	30,640,000	61,280,000	61,280,000	30,640,000	122,560,000
77.7477	78	19	3	2	1	212,391,600	242,408,400	454,800,000	45,480,000	90,960,000	90,960,000	45,480,000	181,920,000
				3	1	215,427,100	245,872,900	461,300,000	46,130,000	92,260,000	92,260,000	46,130,000	184,520,000
				4	1	217,995,600	248,804,400	466,800,000	46,680,000	93,360,000	93,360,000	46,680,000	186,720,000
				5~7	3	221,965,100	253,334,900	475,300,000	47,530,000	95,060,000	95,060,000	47,530,000	190,120,000
				8~10	3	224,113,300	255,786,700	479,900,000	47,990,000	95,980,000	95,980,000	47,990,000	191,960,000
				11~13	3	226,868,600	258,931,400	485,800,000	48,580,000	97,160,000	97,160,000	48,580,000	194,320,000
				14~17	4	230,137,600	262,662,400	492,800,000	49,280,000	98,560,000	98,560,000	49,280,000	197,120,000
				18~20	3	233,173,100	266,126,900	499,300,000	49,930,000	99,860,000	99,860,000	49,930,000	199,720,000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0A	51B	51C	51D	51E	52F	78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0	1	0	0	1
	장애인	1	1	0	0	1	1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2	0	1	1	1	1
신혼부부 특별공급		7	7	0	3	3	3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0	0	0	0	0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	0	1	1	1	1
합 계		14	14	0	6	6	6	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p>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0 1305 2116 1452"> <thead> <tr> <th>구분</th> <th>부산광역시</th> <th>울산광역시</th> <th>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 장애인 : 부산시청 장애인 복지과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자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연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임신부부 또는 임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까지 출산 및 임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임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임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결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 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신청자격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지촉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20.11.12.)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및 추첨제 (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모함)에 가입한 자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약제한 대상자	내 용
1순위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가능)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2순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인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정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시(기존주택 및 분양권 등) 부양가족 수에 미포함하여 산정항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수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자 및 부양가족 산정 시 포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1.2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1.11.23.(화) 09:00~17:30		기타지역 2021.11.24.(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11.25.(목)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소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천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천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천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인영주택 추천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천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천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소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12.02.(목)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2.13(월)~2021.12.15.(수)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사무소 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93번길 6, 2층(구서동)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소(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분양 사무소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02.(목) ~ 2021.12.11.(토)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을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2.0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소에 방문 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 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등)받을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일정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 된 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3조에 따라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소를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사무소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여부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진행이 지연 또는 부적격 판명으로 계약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및 장소 안내

구분	자격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시	2021.12.06.(월) ~ 2021.12.08.(수) 3일간 10:00 ~ 16:00	2021.12.13.(월) ~ 2021.12.15.(수) 3일간 10:00 ~ 16:00
장소	구서역 포르투나 분양사무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93번길 6, 2층(구서동))	
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당첨자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분양사무소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감영증 예방관리 수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대표번호(051-717-3933)로 사전방문예약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분양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 신청자(특별공급 신청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가능)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포함) 자격검증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본인	- 분양사무소에 비치 -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 「주거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해당지역 거주요건 :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 발급 사업 서류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비자 발급 내역,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 등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청약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표2]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차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기록대조일을 주민등록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여부 확인 (현재 해외체류여부 또는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직계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여부 확인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본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	- 출생관련 일차 확인 필요 시
				본인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배우자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의 경우(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발급분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해당자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 혼인으로 혼인기간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지축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기타지역 거주자로 당첨 시)
① 부양가족 인정 (경우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부양가족 가정을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포함' 발급 (*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내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제출 기간 : 주민등록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② 부양가족 인정 (경우2.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포함' 발급(*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 시 "상세" 발급 된 제출서류에 한해 인정)
		○	출입국 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의 해외체류기준 미 충족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출 기간 : 주민등록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검수 추가구비 서류		○	상기 서류 외 계약자인감증명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본인 외 모두(배우자 포함) 제3자로 간주 /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		○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해당 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금융결제원 발급)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거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접수 시에만 해당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새마을금고	9002-1931-6765-2	교보자산신탁(주)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5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 제3항 제24호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임.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

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 등은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무이자대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음.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무이자자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 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음.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임.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함.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짐.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발코니 확장

■ 현관 중문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50A	51B	51C	51D	51E	52F	78
현관 중문 공사비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무상

※ 타입별 중문 공사 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분양사무소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부산은행	101-2065-1681-00	(주)지디산업개발	
납부방법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입주시)]
현관 중문 공사비	10%	-	90%

■ 현관 중문 공사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현관 중문 공사비는 78형은 무상시공 되며 나머지 주택형은 유상으로 시공 됨.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전세대 무상으로 시공 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은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의 경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의경우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식당))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VIII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본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2년 05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단, 신탁업자가 관리행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2022년 11월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아파트 145대, 오피스텔 26대, 그린생활시설 3대, 총 177대(장애인주차 6대 포함)), 자전거 보관소(40대), 감시실(1개소) 등

※ 주차대수, 확장형 주차비율, 장애인주차 위치, 하역공간 등은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주차장 입구 레벨은 우수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도로보다 약간 높으며, 차량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는 지하1층 2.3m 미만임.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9,437,920,000	01282021-104-00028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훅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IX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분양사무소,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인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 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대지지분 감소는 정산하지 않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외부 여건

1) 일반 공통

- 당 사업은 2019년 12월 건축(변경)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당 아파트의 도면은 분양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분양사무소와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당 아파트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조명·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무소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소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든 자료(모형, CG, 카달로그 외)에 표기된 단지외부 도로 및 녹지, 토지 및 건물 등 주변현황에 관한 표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본공사와는 관련 없는 내용임.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 시야간섭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사무소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외벽 색채 및 디자인은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허가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공사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샘플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샘플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샘플하우스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 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인허가 및 변경 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 이후 단지 명칭(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은 인허가청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이후 아파트의 외관,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및 크기, 축벽 디자인, 외부색채, 난간색상 및 재질, 외부 로고사인의 형태/위치/내용, 기타 시설물 위치, 식재 및 포장계획, 옹벽 등은 인허가협의,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로 마감되며 인허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는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해당 호수의 위치, 입면타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용부 계단실, 엘리베이터 외벽면 일부에는 야간경관용 조명이 설치되며,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빛반사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타사 또는 본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분양사무소 및 인허가 변경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연적 외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부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영구배수시스템, 수목관리, 반사거울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 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붕 및 옥탑에 위성안테나, TV 공청 안테나, 이동 통신 중계기, 피뢰침, 저수조, 경관조명, 항공 장애등, 인명 구조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기 바람.
- 실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입면분할창호를 적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샘플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필러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샘플하우스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본 아파트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이후 입주인의 편의성을 위해 단지내 건축물, 시설물, 조정식재 등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입주인 관리부재로 인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원상복구 책임이 없음.
-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변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 등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저층세대 일부는 건물 주변 여건 및 출입 동선 등에 의해 사생활이 간섭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계약 전 반드시 세부 현황을 확인하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2) 세대 내부

- 샘플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침실 붙박이장(해당평형에 한함),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중간 분할바 높이, 손잡이 높이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프레임 및 유리)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샘플하우스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잠금장치사양,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및 욕실의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바닥배수구의 위치, 설치 유무, 설치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부욕실 바닥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샤워부스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파우더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파우더장,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세대 내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커튼박스의 길이는 천정배관 등 본 시공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샘플하우스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타일,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렵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샘플하우스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모든 주택형은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별도로 설치됨.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미설치되었고 하향식 피난 사다리로 대체되며, 화재 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발코니에 설치되어 공간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다름.(층별 교차 시공)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 일부발코니/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은 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실, 욕실 등을 제외되며, 마루마감재는 가구 배치가 되어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됨.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분양을 위해 분양사무소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함.
- 주방후드 상부의 침니는 케이싱의 사이즈는 성능 만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배수구나 우수, 배수 입상의 위치 등은 사용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욕실, 다용도실 등은 상이 함.
- 단위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상 2층, 최상층 세대의 방법을 위하여 거실 및 발코니 내부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하며, 기타 층에는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안방, 주방, 복도, 침실(출입문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음.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조명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으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됨.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에 따라 주방상부장의 규격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 싱크하부에 언더싱크 정수기와 정수기 수전이 기본 적용되며, 정수기 필터 및 수전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공용부/단지 내 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은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경우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상가의 실외기 시설설치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 마감재,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상),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일부 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인허가 및 변경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상세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헬륨, 실외기, 환기구(D.A), 천창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계약 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냄새, 악취발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보행통로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및 데크 등과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 차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의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수경시설 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정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원의 대상이 아님.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 활동은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인에게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체 기둥구조물에 의해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 통행도로를 아파트와 공유하여야 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 고가수조실 내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관조명은 설치 및 위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에 연돌효과에 따른 부하로 인해 원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문닫힘과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네트워킹 설비는 모델하우스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명 및 빛의 산란, 기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물 측면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옥상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옥상층에는 아파트 TV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위치 및 규격/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동 상부에 반사거울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사양,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4) 단지 외부 여건

- 본 사업지는 도로면과 접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형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성)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단차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지하 채광시설,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헨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인증 (친환경 주택성능, 건강친화형 주택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음.
- 인허가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계약 전 확인 바람.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별칙 등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 공동주택관리법 」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과 층간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 공동주택관리법 」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 주택법 」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 공인중개사법 」 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의해 당첨된 주택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9조 제3항 제1의 3호에 의하여 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나 「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 후 입주 할 수 없으며, ②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준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준수함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O(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설치함
	고효율 전동기(라목)	O(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O(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함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O(적용)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 (다목)	O(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사용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라목)	O(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함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O(적용)	세대 내에는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함.	

■ 건축물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공동주택입니다.
- 내진성능관련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능력 진도Ⅶ 0.242g로 계획되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별도)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고
회사명	(주)비전21건축사사무소	(주)와이케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478,000,000	27,000,000	
법인등록번호	180111-0408525	180111-1265495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B동 7층(서초동, 교보타워)	110111-1617434
시공사	기해건설(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6층(거제동, 나래타운빌딩)	180111-0734558
사업주체(시행위탁자)	(주)지디산업개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193번길 6, 2층(구서동)	180111-1203099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등록사업자 : 교보자산신탁(주) / 등록번호 : 서울080008
- 등록사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B동 7층(서초동, 교보타워)
- 인허가 사항 : 2019년 12월 17일 건축허가 / 허가번호 : 2019-건축과-신축허가-78

■ 현장 및 분양사무소

분양사무소	현장주소	문의전화	홈페이지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193번길 6, 2층(구서동) 운영시간 : 오전 10:00 ~ 오후 18:00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15-12	T. 051-717-3933	http://www.kihae.co.kr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분양사무실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